

= 다대도서관 건립(BTL 방식)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9.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7. 3
 다. 상 정 일 자 : 제15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07. 7.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장영석 문화공보과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방식(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서관건립 개요

사 업 명	위 치	부지면적	건물면적	규 모
부산화명·다대도서관 건립	다대1동1548-14	1,657m'	3,090m'	지상4층 지하1층

○ BTL사업 개요

(추정) 협약기간		사업비(백만원)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사업비	BTL한도액	예산
2008~2009년 (15개월)	20년	6,820	5,966	854

※ 예 산 : 부지매입비 773백만원, 용역비 등 81백만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2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은,

- 우리구에 꼭 필요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구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 본 건에 대한 검토방향은 적법성, 타당성, 향후 우리구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 등에 중점을 두었음.

☐ 적법성 검토결과

-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고”목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절차 이행현황》

- 2004. 11. 1 구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 득함
- 2005. 5. 4 부산시로부터 투자사업심사승인 득함
- 2007. 2. 7 문화관광부로부터 BTL사업승인 득함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결과

- 37만여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사하도서관 1개소에 불과하여 전국평균과 부산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전국평균 : 인구9만명당 1개소, 부산시평균 : 인구 15만명당 1개소)
- 그 1개소도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다대지역 등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도서관 건립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 2005년 4월부터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지원은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되어있어 BTL사업방식만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

□ 끝으로, 향후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은,

- 본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관련 사업비만 59억원에 달하여 이를 BTL사업으로 시행할 시 도서관 건립이후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시설임대료와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운영비는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약서 체결시 수익률 산정 등 제반조건이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도서관 준공후 운영방법도 구 직접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의 장·단점과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